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8/ 전송(02)790-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이재인[6548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0783호

시행일자 2024. 4. 2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비상진료 지원방안」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800(2024. 4. 22.)
- 3.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「비상진료 지원방안」 관련 산정 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바, 귀 회 소속 회 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- (대상질환) 암, 희귀질환(극희귀질환, 상세불명 희귀질환,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), 중중난치질환, 중중치매
- (대상자) 종료일이 `24. 4. 20. ~ 5. 19. 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(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)
- (연장내용)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`24. 5. 20. 로 일괄 변경

기존 종료일	변경 후 종료일	재등록신청 시 시작일
`24. 4. 20.	`24. 5. 20.	`24. 5. 21.
`24. 4. 21.		
:		
`24. 5. 19.		

※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, 1차 및 2차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
(1차 : 종료일 `24. 2. 20. ~ 3. 19. ⇒ `24. 3. 20. 로 변경, 2차: 종료일 `24. 3. 20. ~ 4. 19. ⇒ `24. 4. 20. 로 변경)

#붙임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800(2024. 4. 22.) 공문 1부. 끝.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